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14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선종길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호성

변론 종결2021. 3. 3.

판결 선고2021. 5.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9,5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12. 14.부터 2021.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놓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41,9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4. 14. E과 혼인하였다가 2008. 1. 9. E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3. 4. 18. 피고와 혼인하였다.

다. 망인은 2018. 9. 25. 사망하였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딸,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고, 원고들 외에 망인의 자녀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원고들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원고들과 피고는 공동상속인의 관계에 있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상속재산 일부를 단독으로 취득하였는바, 피고가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 나. 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내용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망인에 대하여 구상금,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위 채무를

각자 상속분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자 한다.

### 3.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여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 그는 실질상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은 상속회복의 대상을 원물에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 대상(代償)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점,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인정되는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청구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인 점(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가로 취득한 재산 자체는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있고, 그 상속분은 각 1/3(원고들), 2/3(피고)이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을 전부 점유하거나 이를 처분한 대가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피고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 중 피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내역'은 아래 표의 "항목"란 기재와 같고, 그중 피고가 단독으로 점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은 아래 표의 "인정 가액"란 기재와 같다(단위: 원).

|   |           |           |           |           |          |
|---|-----------|-----------|-----------|-----------|----------|
| 1 | 쌀소득보전 직불금 | 3,045,710 | 0         | 0         | 아래 ① 참조  |
| 2 | 밭농업 직불금   | 309,930   | 309,930   | 309,930   | 다툼 없는 사실 |
| 3 | 논콩 생산장려금  | 4,144,800 | 4,144,800 | 4,144,800 | "        |
| 4 | 논콩 유통장려금  | 2,072,400 | 2,072,400 | 2,072,400 | "        |
| 5 | 오미자 판매대금  | 6,100,000 | 6,100,000 | 6,100,000 | "        |
| 6 | 콩 판매대금    | 1,323,000 | 1,323,000 | 1,323,000 | "        |
| 7 | 밀반출한 콩 대금 | 9,742,800 | 0         | 0         | 아래 ② 참조  |

|    |                |            |           |           |          |
|----|----------------|------------|-----------|-----------|----------|
| 1  | 쌀소득보전 직불금      | 3,045,710  | 0         | 0         | 아래 ① 참조  |
| 8  | F조합 출자지분 상당 금액 | 2,778,184  | 0         | 0         | 아래 ③ 참조  |
| 9  | F조합 예금(G)      | 1,760,000  | 1,760,000 | 1,760,000 | 다툼 없는 사실 |
| 10 | 부의금 잔액         | 4,900,000  | 4,900,000 | 4,900,000 | "        |
| 11 | 트랙터 매매대금       | 30,470,000 | 0         | 0         | 아래 ④ 참조  |
| 합계 | 20,610,130     |            |           |           |          |

① 갑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원고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망인 사망 전인 2018. 9. 20. 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2020. 6. 15.자 준비서면 제2면 참조).

② 원고들은, 망인이 2018년에 콩을 최소 7,158kg 수확하였는데, 그중 5,040kg(판매 400kg + 선별위탁 4,640kg)만 F조합에 처분한 기록이 남아 있는바, 나머지 2,118kg은 피고가 밀반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위 콩 2,118kg 상당의 가액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4,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이 수확한 콩 중 2,118kg을 원고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위 증거들의 내용은 망인의 콩 수확량과는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관적 추측 내지 의심에 가깝다).

③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피고가 망인의 F조합 출자지분 상당 금액을 단독으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2018. 10. 12. F조합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지분 승계를 의뢰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을 제2호증)를 제출한 사실, 위 동의서에는 원고들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된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같은 날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인 F조합 예금(계좌번호: I)의 잔액 1,221,197원을 수령해 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위 예금 잔액을, 피고는 위 출자지분 상당 금액을 각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출자지분 상당 금액을 수령했다거나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위 을 제2호증의 상단 부분을 가리고 제시하여 어떤 내용의 서류인지 모르고 서명·날인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이 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착오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B이 피고의 출자지분 취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는바, 이는 위 동의서(을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나, 위 동의서에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B의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찍힌 것이라는 사실'이나, '그 인영의 날인이 원고 B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에게 트랙터를 증여했으므로, 그 매매대금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가 2015년경 트랙터 등 구입을 위해 F조합에 농기계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9. F조합으로부터 42,67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 망인이 위 트랙터 등을 망인 명의로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 ㉣ 피고는 2018. 10. 15. 위 트랙터 등을 J에게 매도한 사실, ㉤ 당시 매매대금은 피고의 위 대출채무 잔액 30,470,000원으로 하되, J이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실제로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더하여 트랙터 등의 가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및 기록상 드러나는 망인의 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위 트랙터 등 구입 자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 자금을 마련하고 단지 망인이 사용하였던 트랙터를 - 망인의 사망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자 - 대출채무를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피고가 이를 처분하면서 잔여 채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상속회복을 이유로 각 5,888,608원(위 합계 20,610,130원 × 원고들 각 상속분 즉,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망인 또는 원고들에 대한 채권의 내역은 아래 표의 "항목"란 기재와 같고, 그중 이 법원이 인정하는 부분은 아래 표의 "인정 채권액"란 기재와 같다(단위: 원).

|    |                         |            |           |           |                                     |
|----|-------------------------|------------|-----------|-----------|-------------------------------------|
| 1  | 트랙터                     | 30,470,000 | 0         | 0         | 위 가. 2) ④ 참조                        |
| 2  | K회사 관련 대위변제             | 1,780,000  | 1,780,000 | 1,780,000 | 다툼 없는 사실 (2018. 11. 13.)            |
| 3  | 퇴비구입비 대위변제              | 2,014,000  | 0         | 0         | 아래 ① 참조                             |
| 4  | 토지개량비 대위변제              | 932,000    | 0         | 0         |                                     |
| 5  | 농약, 비료, 일반자재비 대위변제      | 4,416,557  | 4,416,557 | 4,416,557 | 다툼 없는 사실 (2019. 11. 18.)            |
| 6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토지 임대료 대위변제 | 1,371,030  | 0         | 0         | 아래 ② 참조                             |
| 7  | L, M에 대한 토지 임대료 대위변제    | 1,710,000  | 1,710,000 | 1,710,000 | 다툼 없는 사실 (2018. 11. 13. 및 같은 달 16.) |
| 8  | 콩 수확 작업비 대위변제           | 1,370,000  | 1,370,000 | 1,370,000 | " (2018. 11. 5.)                    |
| 9  | 오미자 보관비용 대위변제           | 800,000    | 800,000   | 800,000   | " (2018. 9. 28.)                    |
| 10 | 대여금                     | 13,709,485 | 0         | 0         | 아래 ③ 참조                             |
| 11 | 2018년 콩 인건비             | 1,100,000  | 0         | 0         | 아래 ④ 참조                             |
| 12 | 2016~2018년 오미자 인건비      | 5,130,000  | 0         | 0         |                                     |
| 합계 | 10,076,557              |            |           |           |                                     |

① 피고는, 망인이 F조합에 지급하여야 할 퇴비구입비와 토지개량비를 피고가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퇴비구입비, 토지개량비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8호증, 을 제4, 5,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퇴비구입비와 토지개량비가 지급된 피고 명의의 F조합 계좌는 망인이 사용하던 계좌인 점(피고의 2020. 10. 29.자 증거설명서 참조), 망인과 피고는 평소 특별히 계좌 명의인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계좌를 사용하여 상호 수시로 다수의

입출금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비와 같이 비교적 일상적이고 규모가 작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의사나 망인에게 대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부부가 경제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금원을 상호 이체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중 특정 거래만 떼어내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피고는, 망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피고가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하여 부과된 순창군 N, O에 관한 농지임대차사업 임대료 합계 1,371,030원을 납부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P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P가 피고의 대리인 또는 보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가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Q(망인의 어머니이다)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망인이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인에게 13,709,485원(대신 변제한 Q의 채무액 11,237,806원 + 피고가 납부한 이자 2,471,679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8. 21. R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7. 8. 28. Q의 대출금 계좌로 11,237,806원을 입금하면서 '고구마선수금'이라고 기록해 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11,237,806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콩 재배 및 오미자 수확 관련하여 망인이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을 제12, 13(가지번호 포함),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S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S의 증언과 같이 피고가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두고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의사나 망인에게 대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지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망인의 금전채무는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가 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고,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는

분할채무자 관계이다. 이러한 경우 분할채무자 중 1인이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율 이상으로 변제하였다면 다른 분할채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3)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이 부담하던 금전채무 10,076,557원을 대내적 부담비율, 즉 상속분 이상으로 전액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2,879,016원(위 10,076,557원 × 원고들 각 상속분 률)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각 5,888,608원의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최종적으로 변제한 2019. 11. 18.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가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답변서가 2020. 2. 21.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로써 원고들의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채권(원고들마다 각 5,888,608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9. 11. 18.에 소급하여 피고의 구상금 채권(원고들에 대하여 각 2,879,016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회복을 이유로 각 3,009,592원(5,888,608원 - 2,879,0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이원식**

1) 참고로 피고가 주장하는 콩, 오미자 관련 인건비가 출금된 피고 명의의 F조합 계좌는 을

제15호증과 같은 계좌로서, 망인이 사용하던 계좌이다(피고의 2020. 10. 29.자 증거설명서 참조).